

# 「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3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「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중 조문내용이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,
- 1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1년을 계속하여 지급하고, 2학기 선발자는 당해 학기만 지급함으로써 인하여 생겨나는 장학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제3조 및 제4조이 규정에 따라 매학기 추천, 심의, 지급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의 일부 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장학금 지급시 1학기 선발자와 2학기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액을 동일시 하기 위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학년을 마칠때 까지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1학기과 2학기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